

##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방안에 관한 고찰 - 불교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ligious Op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Conflicts  
-Focusing on the historical cases of Buddhism-

김성식\*

Kim, sengsik

### 〈목 차〉

- I. 서론
- II. 불교적 분쟁해결의 이념
- III. 불교적 분쟁해결의 역사적 사례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분쟁, 대체적 분쟁해결, 불교적 분쟁해결, 분쟁해결, 종교

\* 중앙승가대학 강사, 중재인, 문학박사, [wmtld@naver.com](mailto:wmtld@naver.com).

## I. 서론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sup>1)</sup>)은 사법적 구제수단인 법정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에 다양한 종류의 분쟁을 재판이 아닌 방식으로 법원과 행정기관의 조정 그리고 민간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sup>2)</sup> 이처럼 그 해결방법이 반드시 사법제도에 의지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제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협의나 조정 등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민법의 사적자치원리와 부합된다.

대체적 분쟁해결과 공통점이 많은 불교적 분쟁해결(Buddist Dispute Resolution, 이하 “BDR”)이 있다. BDR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經)·율(律)·론(論) 삼장(三藏)에 따른 멸쟁(滅諍) 방식이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우선 분쟁이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또는 갈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언쟁, 분쟁, 갈등, 전쟁 등은 모두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해당사자의 내면은 욕구, 분노, 번뇌,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는 탐(貪)·진(瞋)·치(癡)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정신적 갈등의 배경에는 업(Karma)에 의한 악연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갈등의 원인은 의업(意業)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분쟁해결에 관한 불교적인 목표는 ‘마음의 평화’인데, BDR의 핵심적 근거는 ‘연기법(緣起法)’이다.<sup>3)</sup>

연기란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상의상즉(相依相卽)의 관계를 나타낸다. 제반 현상은 인드라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그물코에 다른 모든 존재들을 비추는 인드라마의 구조는 화엄 세계관에서 각각의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무명의 연기적 관계가 분쟁의 원인이라면 마음속의 무명을 밝히는 것이 최상의 연기적 깨달음이며, BDR의 핵심이 된다.

이처럼 BDR의 이념에는 ‘평화, 비폭력, 자비심, 한마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한 BDR의 목표는 『유마경(維摩經)』의 「불국품(佛國品)」 가운데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心淨佛土淨)’고 설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외부세상은 내면세계를 반영하듯이 BDR의 목표는 심청정(心淸淨)에 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사회 및 국가 공동체와 연계된 BDR의 추진방법으로 ‘대화와 소통, 공동체 규범의 준수, 사회적 윤리의 실현, 사회적 합의를 통한 회복과 사회통합’이 있다.

1) 김윤정,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한국소비자원, 2015, p.2.

2) 김용길,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중재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2, p.4.

3) 김성식, 「불교적인 대체적 분쟁해결(ADR)방법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p.75.

ADR과 BDR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있으며, 상호보완 작용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의 효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분쟁해결시에 재판이 아닌 대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정의, 사적 자치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반면에 분쟁해결에 대한 본질과 대상 그리고 방법 등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 BDR은 ADR의 큰 규범 속에 있지만 분쟁해결의 근원적인 대상으로 ‘마음’을 지목하며, 승가 생활을 위한 규범화된 율장의 내용은 모두 마음에 관한 ‘화합’을 위한 내용이다. 이러한 BDR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가치는 ‘평화와 일심(一心)’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ADR이 BDR의 이념과 목표를 수용하면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운영체계 구축과 함께 그 활성화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불교 내부나 종교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한 BDR의 활용 방안 등이 더욱 모색되어야 한다.

## II. 불교적 분쟁해결의 이념

### 1. BDR의 이념 및 목표

BDR은 보살이 육도윤회로 고통받는 사바세계에서 평화로운 정토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교적인 방식의 멸쟁(滅靜)이다. 이러한 불교적 방식은 ‘다툼 없음’과 ‘다툼의 소멸’을 원칙으로 대별된다. 이는 무릇 생명이 인드라마의 연기적 관계에 의한 상호의존성을 자각하여 중재와 조정 등의 방법으로 사건, 사고, 갈등 등의 사회적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분리된 마음을 화해와 조화, 화합 등 통하여 일심(一心)으로 통섭(統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 (1) BDR의 이념

##### 1) 평화

율장에서 승가를 화합승(和合僧, samagga-saṃgha)이라 한다. 이 때 “화합”이란 갈마(羯磨)를 하나로 하고, 설계(說戒)를 하나로 하는 것을 뜻한다. 빨리율에는 화합승을 samānasamvāsako samānasimāya t̥hito라 정의했다. 공주(共住)생활을 같이 하고 동일한 경계(境界)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samānasamvāsako는 같은 주장이나 같은 갈마에 의하여 정신적인 측면에서 나뉘어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samānasimāya t̥hito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나뉘어 있지 않는 것, 즉 동일한 공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4) 김성식, 앞의 논문, p.82.

에 따르면 화합은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의 양면에 걸쳐 있으며, 이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구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5)</sup>

승가(僧伽, saṅgha)를 통해 살펴본 BDR에는 출가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4쟁(四諍)이 있다. 이에 붓다는 분쟁이 일어나는 인연에 따라 분쟁을 7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 7가지를 7멸쟁법(七滅諍法)이라 하는데, 현전비니(現前毘尼, sammukhāvinaya)·억념비니(憶念毘尼, sativinaya)·불치비니(不癡毘尼, amūlavinaya)·자언치(自言治, paṭiñña)·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떡죄상(覓罪相, tassapāpiyyasikā)·여초부지(如草覆地, tinavatthāraka)가 그것이다. 결국 BDR이란 곧, 멸쟁 또는 화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승가 화합과 멸쟁은 물론 붓다의 보편적 세계관에 대한 일반적인 말은 평화이다. 평화와 관련한 불교 언어는 산스크리트의 산띠(santi)에 해당하는데, 이는 적멸(寂滅), 적정(寂靜), 안온(安穩), 열반(涅槃), 지식(止息)으로 번역된다. 아울러 『大義釋』의 산띠(santi)에는 앗잔따-산띠(accanta-santi, 究竟寂), 따당가-산띠(tadaṅga-santi, 彼分寂), 삼무띠-산띠(sammuti-santi, 世俗寂) 등 3종류가 있다. 첫째의 앗잔따-산띠는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불사(不死)의 경지나 열반(涅槃)의 경지이다. 이것은 ‘제반 조건 주어진 것들의 평정, 제반 집착의 포기, 탐욕에서 벗어남, 갈애의 소멸, 적멸, 열반이다.’ 둘째의 따당가-산띠는 번뇌의 일부분이 선정(禪定)으로 잠시 억눌린 경지이다. 이것은 ‘형상을 초월해 형상을 여윈 고요한 해탈에 신체가 접촉될 수 있지만, 번뇌가 제대로 부서지지 않아 현세속에서 번뇌 없는 마음에 따른 해탈과 또 지혜에 따른 해탈을 스스로 곧바로 알아차리거나 깨닫지 못하여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다.’ 셋째의 삼무띠-산띠(sammuti-santi, 世俗寂)는 세속에서 적멸 또는 평정의 상태로, 초기경전에 보이는 ‘62가지 악견(惡見)을 소멸시킨 것이다’.<sup>6)</sup>

BDR의 이상적인 가치는 화합, 화쟁, 멸쟁 등을 통한 공동체 사회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는 불교의 계(戒)·정(靜)·혜(慧) 삼학(三學)의 면에서 개인생활과 집단생활에 있어 먼저 계(戒)와 율(律)을 통한 자기완성이 우선시 된다.

## 2) 비폭력

『율장』 속의 BDR은 다툼없는 “비폭력”(ahimsā, 不害, 不殺生, 不傷害, 非暴力)의 수계(受戒)정신과 연관된다. 이는 불교인들이 사미(尼)계, 비구(尼)계, 보살계 등을 수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마치 양굴라말라가 거리에서 돌팔매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꺼이 자비와 인욕을 지키는 것과 같이 불교는 비폭력을 최고의 계율로 삼고 있다.

WHO 보고서(2014)에 의하면 세계는 ‘2012년에만 47만 5천 여명이 폭력으로 살인을 당

5) 이철현, 「불교의 분쟁문제해결을 위한 이념과 실천-율장의 7멸쟁법(滅諍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제12권,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p.2.

6) 마성, 「평화의 불교적 의미」, <불교닷컴> : <http://www.bulkyo21.com>, (2022.10.20일 방문)

하였다. 또한 매년 평균 4명의 어린이 중 1명이 물리적인 학대에 놓여 있으며, 평균 3명 중 1명의 여성이 파트너에게 물리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당하였다. 노인들 역시 평균 17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는 이데올로기, 종교, 종족의 차이, 개인 및 집단간의 탐욕으로 분쟁과 전쟁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sup>7)</sup> 하지만 이러한 생명의 존엄과 관련하여 달라이 라마는 폭력이나 처벌이 아니라 이성(理性)과 부드러운 마음 수련에 의하여 세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분쟁해결은 폭력이나 전쟁 등이 아닌 비폭력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sup>8)</sup>

이와 관련한 『울장』의 7가지 멸쟁법은 분쟁의 해결에 있어 언어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UN은 지나간 70년간의 평화를 쌓기 위한 활동들에서 주목되는 하나의 결론으로 평화는 폭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분쟁 종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의 구축이야말로 지난 수 십년간 UN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sup>9)</sup>

### 3) 자비심(慈悲心)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도행품(道行品)」<sup>10)</sup>에서 ‘보살’은 붓다의 깨달음을 추구하여 열반으로 나아가면서, 아울러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한다. 아울러 지장보살은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도리천궁신통품(勿利天宮神通品)」에서 “제가 이제 미래세가 다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에 이 죄로 고통받는 육도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설해서 모두 해탈케 한 후, 그 자신도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습니다.”<sup>11)</sup>라는 대원(大願)을 세웠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의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은 동전의 양측면과 동일하다. 자비심은 ‘연기법<sup>12)</sup>’의 각성인 깨달음과 이에 따른 보편적 책임의식으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인류애(人類愛)이다.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면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 보편적 책임의식은 제반 존재에 대한 자비의 본질로써 사인(私人) 및 집단 사이에 진정한 화합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따라서 무지와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으로 비롯된 모든 폭력, 갈등, 분쟁 등은 이러한 연기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해, 용서, 연민, 동정 등 자비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인 BDR의 핵심요인은 “자비심”이다. 보살은 이러한 자비심을 가진 자로서 그가 행하는 보편적인 이타행(利他行)을 보살도(菩薩道)라 한다.

7) 이도흠, 「폭력 유형별 화쟁의 평화론」, 『통일과 평화』 9집,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2.

8) 김성식, 앞의 논문, p.84.

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뉴스』, Vol.745, 2018, pp.7-9.

10) 『대정장』 8, p.427C

11) 『대정장』 13, p.778b

12)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상즉상의(相即相依)하여,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4) 한마음(一心)

일심(一心)이 상징하는 바는 붓다의 마음이다. 즉 BDR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비, 갈등, 분쟁이 없는 일심에 있다. 예를 들어 마음의 근원(心源)이란 분리되지 않은 세계의 실상을 의미할 뿐으로, 마음이라는 또다른 별도의 실체(相)를 만들어 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와 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는 더 이상의 번뇌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원효는 진속불이(眞俗不二)를 통하여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티끌 없는 하늘에 비유하였다. 중생은 비록 시비(是非), 대소(大小), 동이(同異), 미추(美醜) 등 분별심과 고정 관념으로 세상에 대하여 차별과 대립을 주장하지만, 심원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에서 분별심을 통한 증식방식인 생멸문이 일심과 멀어지는 동시에 번뇌와 분쟁을 일으켜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문인데 비하여, 주(主)와 객(客)의 분별이 사라진 것이 번뇌와 분쟁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자유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처럼 귀일심원(歸一心源)은 분별이 사라지는 화쟁과 멸쟁의 길인 동시에 요익중생(饒益衆生)을 구현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sup>13)</sup>

#### 5) 소결

이처럼 불교의 이념은 연기법의 각성과 함께 ‘비폭력’, ‘평화’, ‘자비심’, ‘불이(不二)’ ‘일심(一心)’ 등이 BDR의 핵심 원리이다. 따라서 중생이 연기법을 깨달아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불교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동시에 일심을 지향하게 된다. 원효는 자찬훼타계(自讚毀他戒)와 관련하여 동일 행위에 대한 지범(持犯)을 5단계로 나누었고, 그 기준을 드러난 행위보다 그 행위를 유발한 내면적인 동기를 우선시 하였다.<sup>14)</sup>

아울러 육조 혜능은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계(戒)’라고 하였다. 박병기는 『의미의 시대와 불교윤리』에서 “우리 삶의 바람직한 모형은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로 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탐진치의 집착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공성의 본질(一心)을 깨달아서, 걸림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에서 최선의 윤리적 지향점”이라고 하였다.<sup>15)</sup> 특히 일심은 ‘모든 것이 마음(一切唯心造)’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를 나타낸다.

13) 김성식, 앞의 논문, p.84.

14) 남동신, 「원효의 계율사상」, 『韓國思想史學』 17권, 한국사상사학회, 2001, p.24.

15) 박병기, 『의미의 시대와 불교윤리』, 씨아이알, 2013, pp.245-246.

### Ⅲ. 불교적 분쟁해결의 역사적 사례분석

#### 1. 초기불교의 분쟁해결 사례

##### (1) 석가족과 꼴리야족의 분쟁해결

석가족(Sakya 族)과 꼴리야족(Koliya 族)은 이웃 국가로서 오랫동안 친분이 매우 돈독했다. 싯다르타 태자를 낳은 마야 왕비와 그를 길러 준 마하빠자빠띠, 태자비였던 야소다라까지 꼴리야족 출신이다. 이와 같이 두 국가는 로히니 강을 중심으로 두고 강물을 끌어대어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해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강과 저수지의 물이 바닥이 나게 되자 두 나라의 모든 농작물이 말라죽게 되었다. 드디어 두 부족 사람들은 강 양쪽에서 서로 물을 끌어대겠다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사소한 푸념과 말시름에서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큰 싸움으로 변지면서 양국 사이의 평화는 깨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치하게 되었다.

붓다는 그때 로히니강 근처의 마하와나 정사[大林精舍]에 주석하고 계셨는데, 아침에 분쟁에 빠져 있는 동족들을 살피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서로를 파괴하겠구나,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분명히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하였다. 두 국가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팽배해질 때, 붓다는 로히니강변에 홀로 도착하였다. 그리고 두 국가 사이의 분쟁 상황을 제3자의 위치에서 “작은 가치의 물 때문에 값을 따질 수 없는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는 것은 적당한가”<sup>16)</sup>라고 설득하면서 조정으로 화해시켰는데 이 때 양국 왕들은 엎드려 사죄하고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게 되었다.

이 같은 로히니강의 사례에서 붓다의 분쟁해결의 방식은 적당히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어리석음의 실상을 직시하게 하여 분쟁의 본질을 일깨워서 마음의 차원에서 참회를 통한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분쟁의 화해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곳은 마음이다. 아울러 불법(佛法)은 선정 삼매의 추상적 언어이기 이전에, 치열한 현장의 도구이며 문제 해결의 수단인 것이다.<sup>17)</sup> 붓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신에 가득 찬 양 부족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용기 있는 ‘무외시(無畏施)’의 모습을 보이셨다.<sup>18)</sup>

16) 범라스님, 『아난존자의 일기』 1권, 운주사, 2000, pp.306-307.

17) 김재영, 「붓다운동으로서의 초기불교 시대」, 『불교평론』 14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3, p.1.

18) 김성식, 앞의 논문, pp.132~133. .

## (2) 밧지족의 분쟁

2,500년 전 인도지역의 강대국인 마가다국의 아자따사투왕은 밧지족을 공격하기 전에 그 당시 재상인 밧까라 바라문을 보내 전쟁의 승패를 붓다에게 듣고자 했다. 밧까라 바라문은 라자가하[王舍城]의 기사굴산(영취산)에 머무시는 붓다를 찾아뵙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왕의 뜻을 전했다. 이에 붓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밧지족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7가지 불쇠법(不衰法)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밧지족은 ‘칠불쇠법’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붓다는 밧지족 사람들이 7가지 가르침 중 하나만을 갖추고 있다면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인데, 하물며 7가지 모두를 지킨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즉 밧지족 사람들은 ① 밧지족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자주 열고 ② 서로 화합하고 ③ 전통을 존중하며 ④ 어른을 공경하고 ⑤ 여자들을 잘 보살피고 ⑥ 조상을 잘 섬기며 ⑦ 아라한들을 잘 살피고 존중하였으므로 마가다국의 대신인 밧까라 바라문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다.

여기에서도 붓다의 ADR 방식은 그냥 ‘전쟁은 잘못됐다!’라고 단정하거나, 또한 상대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붓다는 아난을 통해 영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의 차이를 ‘칠불쇠법’을 통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간접적으로 이상적인 국가운영의 모델을 7가지로 말해줌으로써 밧까라 바라문의 눈높이에 맞춘 붓다의 설명방식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전쟁의 무익함과 동시에 국가나 사회의 운영원리를 전해 받고 돌아갔다. 이로 인하여 ‘칠불쇠법(七不衰法)’은 국가 또는 마을을 통치함에 있어서 훌륭한 가치와 규범을 나타내는 공동체 생활의 원리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 (3) 꼬삼비 승가의 분쟁해결

출가 수행자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는 다양한 갈등이 생길 소지(素地)가 많다. 비록 출가자의 수행생활이지만 일정한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보면 구성원들의 개성과 습관들 그리고 각자의 고정관념들 사이에서 늘 마찰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는 포살, 자자, 갈마 등 계율중심으로, 그 후 대승불교는 여기에 청규와 중현중법을 중심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였다. 「꼬삼비경」의 발단 배경에는 두 비구 사이에 일어난 논쟁에 때문인데, 이는 사소한 계율에 관한 오해로부터 큰 논쟁으로 변해서 급기야 큰 승단과 꼬삼비에 사는 재가신도들이 두 쪽으로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다.<sup>19)</sup>

“울을 호지하던[律師, vinaya-dhara] 비구와 경을 호지하던[經師, sutta-ntika] 비구가 한 거처에 살았는데, 그때 경사(經師)가 세면대에서 사용했던 물을 버리지 않고 대야에 그대로 담아두고 나간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제자들간에 거짓말 분쟁으로 계를 범했다고 말을 함으로써 서로 말다툼(kalaha)이 생겼다.<sup>20)</sup>

19) 김성식, 앞의 논문, pp.135-136.



이에 어떤 비구가 세존을 뵈러 가서 “세존이시여, 지금 꼬삼비에서는 비구들이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민을 일으키시어 그 비구들을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up>21)</sup> 하며 말씀드렸다. 이에 붓다는 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분쟁하지 말라고 3번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다. 붓다는 「오염원 경(Uppakkilesa Sutta)」을 남기고 동쪽으로 떠나셨는데 그 후 꼬삼비 승가는 우바새와 우바이도 등을 돌리고 한 끼의 공양조차 거절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분쟁의 불길도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한 비구들은 붓다를 찾아 참회를 하게 된다. 이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7멸쟁법 중 하나인 여초복지(如草覆地)가 적용된 경우이다.

이러한 다툼은 오늘날에도 강원, 울진, 학림, 선원 및 큰 사찰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쟁 가운데 하나이다. 언쟁이란 붓다가 설한 경과 율의 해석, 불설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처음에는 의견 대립에서 시작하여 결국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이다. 언쟁은 사실 파승(破僧)으로 치닫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예를 들어 불멸 후 100년경의 제2차 결집과 관련한 십사비법, 대천의 5사, 율의 증광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불교적 분쟁 해결(BDR)은 이러한 분쟁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삼독심(三毒心)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 차원의 해결 또는 회복이다.

## 2. 부파불교의 분쟁해결 사례

### (1) 십사의 분쟁 발생

붓다의 열반 후 기원전 5세기경에 인도의 남쪽과 서쪽으로 불교의 교세가 점차 확산되었다. 지역적인 특수성, 전도사의 법과 율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 구전으로 전승되는 시기이므로 수행 위주의 종교적 성향으로 빈번한 교류는 쉽지 않았다.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농경문화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또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변동이 일어남으로써 상업화된 발전된 도시들이 탄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웨살리는 문화적·종교적·상업적 성향이 강한 도시였다.

부파불교의 분쟁은 대부분 법과 계율 및 수행방법에 관한 여법(如法)과 비법(非法)에 관한 사항이었다. 붓다가 계설 때에는 붓다의 카리스마와 법과 율의 제정을 통해 교단은 더욱 화합승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할 수 있었지만 교주인 붓다의 부재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교단의 조직과 활동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중요한 분쟁 사건이 불멸(佛滅) 후 100년경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는 야사 비구에 의해 ‘베살리’에서 발생한 십사(十事) 논쟁이다. 야사(Yasa) 비구가 밤

20) MA.II, pp.393-394.

21) 대립스님 옮김, 『맛지마니까야』 제4권, 김해: 초기불전연구원, 2012, p.322.

지국의 배살리에 머물면서 승가에 대해 자구(資具)를 마련하는데 쓸 금전보시를 요구한 후 그 금화를 배분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사 비구는 사과하기는커녕 밧지족의 비법적(非法的)인 탁발행위를 비난하여 신도들을 자극함으로써 고발(ukkhepaniyakamma, 擧罪羯磨)로 인한 계율위반으로 분쟁의 발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십사쟁사를 해결하기 위한 비구들이 모두 발리카원에 모여 8명의 단사인(斷事人)을 선출하고, 레바타 장로의 사회로 갈마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십사(十事)는<sup>22)</sup> ‘담마와 계율에 어긋나며, 스승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여 10가지 질문조항은 종결되고 분쟁이 해결되었다. 이때 700명의 장로 비구들이 이 계율을 합송하였기 때문에 이 계율의 합송을 “700합송”이라고 부른다.<sup>23)</sup>

이러한 십사논쟁은 당시 밧지국의 교단 내외의 규범, 탁발 분위기 등 시대적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불문하고 율의 입장에서 배살리 비구들의 의식주 생활인 10가지 행위에 대한 정(淨)과 부정(不淨)을 판가름하는 분쟁이었는데, 10가지 모두를 부정하는 판정으로 인하여 ‘십사비법’이라고도 한다.<sup>24)</sup>

## (2) 십사의 판정과 부과 분열

단사인 제도를 통한 십사비법(十事非法)의 판정과 분쟁해결은 불교 교단이 결국 부과불교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판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 밧지족 비구들이 별도로 1만 명의 지지자를 모아 법과 율의 결집을 행함으로써 불교 교단은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되었다. 그래서 빠텃야 등 인도의 남서쪽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은 상좌부가 되었고, 십사를 주장하는 배살리 교단의 비구들과 율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비구들을 중심으로 대중부가 형성되었다.<sup>25)</sup>

이러한 상좌부와 대중부의 분열이 의미하는 바는 4인 이상의 대중이 뜻을 달리하면 기존의 현전승가와 계(界)를 달리하여 별도로 법과 율의 결집을 통해 새로운 교단을 만들 수 있는 빌미이다. 파승에 관한 파갈마승만이 의미를 가질 뿐 붓다에 비견할 인물이 없는 점에서 파법륜성의 근거는 이미 희박해졌다. 따라서 언제든지 동견자(同見者)들과 함께 부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되는 법, 율,<sup>26)</sup> 수행방법 등 불설(佛說)에 관한 쟁사들이 이제

22) ① 염정(鹽淨, kappati sin.gilon.akappa), ② 이지정(二指淨, kappati dvan. gulakappo) ③ 취락간정(聚落間淨, kappati gayantarakappo) ④ 주처정(住處淨, kappati ayayakappo) ⑤ 수의정(隨意淨, kappati anumatikappo)이다. 별중(別衆) ⑥ 구주정(久住淨, kappati ayin.n.akappo) ⑦ 생화합정(生和合淨, kappati amathitakappo) ⑧ 수정(水淨, kappati jalogi payun) ⑨ 불익루니사단정(不益縷尼師檀淨, kappati adasakam. nislyanan) ⑩ 금은정(金銀淨)

23) Vinaya-Pitaka, 「졸라와가」 12, “700명의 합송”; 일아스님 역편,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pp.688-689.

24) 김성식, 앞의 논문, pp.141~142.

25) 위의 논문, p.142.

별도의 부파로 조직화 및 세력화가 가능하게 됨으로 부파불교의 분쟁들이 자동 해소되었다. 따라서 부파불교의 분쟁해결의 의미는 정체되어 있는 불법의 흐름이 막혀있는 장애물인 불제불개변(佛制不改變)의 원칙을 별도로 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르면서 다시 다양한 줄기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대중부는 스스로 일어나서 지역과 공간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수성을 수용하며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 대중부의 사회적 지지와 발전은 다시 부파분열을 통해 전승되어 갔다. 붓다가 안 계신 시·공간이지만 무상의 절대적 가르침 속에 살아가면서 오직 고착화된 율법에 근거하여 고집스럽게 견지(堅持)해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법과 율과 불소설(佛所說)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부파불교 등장의 당위성이 의미하는 것은 불법이 세상의 흐름에 유익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문수보살경』에<sup>27)</sup> 잘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상좌부와 대중부, 그리고 이를 포함한 20여개의 부파는 모두 비법이기보다 여법한 계승 또는 발전과정으로 보면 분쟁의 논란은 모두 해결되는 것이다. 약 400년을 이어온 부파불교의 분쟁사는 불설(佛說)에 대한 강한 보전에 반대하는 불법에 대한 다양성의 인정과 보편적 수용이다. 그것은 또 대천의 “5사<sup>28)</sup>”를 통한 교단이 두 파로 분열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천의 5가지 주장에 따른 분쟁의 원인은 모두 붓다의 참된 가르침이라는 불법의 진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파논자들의 노력은 대승불교를 낳는 주춧돌이 되었다. 각 부파간의 분열은 상호간의 차이를 드러낼지언정 각자가 이해하는 대로 올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결과이다. 불법의 진정한 가치 실현은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역할에 다르마(Dharma)로서 충분한 기준과 역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3. 대승불교의 분쟁해결 사례

#### (1) 선교 및 유불선의 분쟁과 서산대사

서산(休靜, 1520-1604)이<sup>29)</sup> 살았던 조선은 대외적으로 배불정책 속에 불교의 기반들은

26) 율은 보통 수범수제(隨犯隨制)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즉, 붓다는 비구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율을 하나씩 제정했다. 또 이미 제정된 율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에 새로운 규정이 몇 번이나 추가된다. 이렇게 각 율의 조문이 정해지면 비구들은 그 규정에 따라 생활해야 했다. 그리고 생활하는 중에 또다시 기존의 율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붓다가 다시 적절한 율을 추가하여 제정하였다. 이자랑, 「단사인(斷事人) 제도와 승가 분쟁 해결의 원칙:제2결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와 사회』 10권 1호, 2018, p.10.

27) 『文殊師利問經』 下, 大正藏14, pp.501a-501b,

28) 5事란, 첫째, 아라한은 성욕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아라한은 무지가 남아 있다. 셋째, 아라한은 의심이 남아 있다. 넷째, 아라한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불도는 소리로써 얻어진다.

29) 휴정의 사상은 『선가귀감』, 『선교석』, 『운수단』, 『청허당집』, 『선교결』 등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교(敎)를 배제하고 선(禪)만을 주장하지 않았고, 禪을 설명함에 반드시 敎를 상대하여 비교 설명했다. 선의 우월성은 사교입선의 과정처럼 출가수행자의 본분사해결과 관련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선과 교

점점 쇠락해갔으며, 내부적으로 선교(禪敎)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불교의 수난시기였다. 출가자는 바람 앞의 등불 속에서도 서로의 사상을 내세워 대립하고 비난하였다.

선교 갈등은 신라 말에 형성된 선종계열인 9산과 교종계열의 5교로부터 시작하여 서로 대립과 반목 속에 고려로 이어졌다. 또 고려의 의천은 교선을 융합하는 천태종을 창시했고, 고려 말에는 지눌의 선교겸수 및 정혜쌍수를 중심으로 타락한 불교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겨우 선종 승단형태의 조계종으로 자리매김하여 조선으로 이어갔다. 하지만 조선의 승유정책에 따라 태종은 불교종파의 11종에서 7종으로 통합시켰고, 세종은 다시 7종에서 선종과 교종의 두 종파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종에 이르러 선교(禪敎)양종마저 폐지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교학자(敎學者)는 교학자대로, 수선자(修禪者)는 수선자대로 본분을 망각하고 시류에 흔들리며,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유교는 조선조의 정치와 종교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역할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교단내의 선·교의 갈등과 분쟁은 통일 신라의 원효에 의한 화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라 말과 고려로부터 내려온 불교 교단 전체의 일대난제였다. 대표적으로 당시 교단내의 분쟁은 밀교파(密敎派), 정토파(淨土派), 간경파(看經派), 선수행파(禪修行派) 등이 있었다. 특히 교단 내의 선교(禪敎) 분쟁은 오랫동안 무질서하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선(禪)과 교(敎)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단 내 분쟁의 증폭은 마침내 휴정에 의해 조계 단일종으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휴정의 독보적인 선교 양면의 수행력에 따른 선교관(禪敎觀)과 시대적 난국 속에서 호국불교로서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했던 지도력 등이 있었다. 그는 1549(명종 4)년에 승과에 급제해서 선종과 교종의 판사를 겸임하였고, 임진왜란 때 외군을 무찌른 승병장으로 8도 16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의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선종사(禪宗師)인 경성일선선사(慶聖一禪禪師)와 부용영관(芙蓉靈觀)의 법통을 이은 제자였다는 점과도 무관할 수 없다.

휴정은 유불선 사상이 궁극적인 진리에 둘이 아님을 밝히는 유·불·선 3교의 통합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신가귀감』, 『유가귀감』, 『도가귀감』을 통해 삼가(三家)사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동일하며, 하나의 마음은 궁극에 가서 일물(一物)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구경의(究竟意)로 회통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정신들은 조선 후기 불교계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현대 한국 불교의 수행풍토로 이어졌다. 그것은 현대 한국불교가 임제종 계통의 간화선 종지종풍을 잇게 했던 역사성 외에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쟁정신과 회통문화에 끼치는 역사성은 큰 의미가 있다.<sup>30)</sup>

는 분리되거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를 밝혔다. 그의 선교관은 규봉이 지은 『都序』의 내용처럼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禪은 부처님 마음(經是佛語 禪是佛意)’이라는 대 전제 속에 있었다.

30) 김성식, 앞의 논문, pp.145~149.

## (2) 티베트불교의 삼예의 논쟁

『돈오대승정리결』에 따르면 티베트의 삼예 대사원(bSam yas dgon pa)의 논쟁은 오천 축국에서 바라문승 30인과 대당국에서 마하연을 포함한 3인의 초청(787년 이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실제로 전개된 삼예사의 대론은 792년부터 794년 사이에 인도불교계와 중국 불교계의 대립과 논쟁의 과정이며, 돈수론(頓修論)의 화상 마하연(摩訶言可何)과 점수론(漸修論)의 까말라실라(KamalaŚīla)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삼예사의 대론은 불교를 국교로 공인한 티베트의 티송데첸(742~797)왕이 불교 활성화를 위해 인도와 당의 두 나라로부터 불교를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티베트의 최초의 사원인 삼예사(bSam yas)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당에는 불교도입사절단을 파견하여 781년에는 불교에 정통한 승려 두 사람을 교체 지원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786년에 둔황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이 지역에서 선풍을 드날리고 있던 선승 마하연이 티송데첸 왕의 초청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 돈오계의 선종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티베트에서 마하연의 돈법(頓法)은 짧은 시간에 교세가 확장되어갔다. 티베트의 불교는 산타락시타 계열의 주도로 인도계 불교의 틀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연 등 중국계 불교는 문성공주와 금성공주 등 왕비계열의 외척세력들과 각 부족의 수장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sup>31)</sup> 이러한 분위기는 인도불교계의 위기의식과<sup>32)</sup> 함께 삼예의 논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다.<sup>33)</sup>

바라문승들은 돈오선문은 비불설이며 정폐(停廢)임을 황제에게 진언하자(792) 티송데첸왕은 점법과 돈법의 대론을 권하였으며 이에 따라 1차 대론은 3년간(792~794)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인도불교계는 인도의 까말라실라를 초빙하여 795년 삼예사 보리원에서 2차 대론을 갖게 되는데 왕의 어전 논쟁의 승패가 있었지만 왕석의 『頓悟大乘正理決』에서는 마하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수행을 허락받았으며, 이 후 둔황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삼예의 논쟁은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계에 봉착한다. 그것은 사상과 문화 및 언어적 장벽에 따른 상호 이해의 부족이며 정치적인 외압에 따른 성급함과 관련이 깊다. 중국어와 돈오선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까말라실라와 범어 및 인도불교사상에 어두운 마하연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상호 이해의 부족과 소통의 한계는 논쟁 자체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되는 원인이 되었다.<sup>34)</sup> 이러한 상황에서 대론을 통

31) 김웅철, 「깨달음 논쟁, 그 오래된 역사」, 『불교평론』 66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6, p.6.

32) 중국계의 돈법(頓法)에 관한 법이 붓다의 가르침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인도계의 승려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모든 불교적 분쟁의 원인은 대체로 여법과 비법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에 따른 삼예의 논쟁은 티베트 불교사에서 의미가 깊다.

33) 이에 대해 티베트의 역사서인 『바제 sBa bzhed』, 『부원최중 Bu ston Chos 'byung』에는 두 세력의 각축과 대립이 잘 표현되어 있다. 김성식, 앞의 논문, p.151.

34) 이하운, 「삼예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사회사상적 고찰 - 8세기 티베트의 정치변동과 종교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회당학보』 15, 회당학회, 2010, p.34.

한 이분법적인 시비를 가리는 승패는 극단적으로 가기 쉬웠을 것이다.

대부분의 분쟁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에 따른 오해(誤解)이다. 산타락시타계와 마하연계는 이미 이해(利害)관계의 충돌 속에 집단의 파벌의식과 진영논리에 휘말려 있었다. 티베트 불교의 정통성에 대한 주장,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의 부족,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 등은 서로 상대를 배척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삼예논쟁은 법과 비법의 본질적 논쟁이라기 보다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독점적 지위나 권한을 잡기 위한 정치적·종교적 분쟁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3) 중국 삼무일종의 난과 분쟁해결

중국 불교사에서 법난(法難)은 크게 4번 일어났다. 북위, 북주, 당, 후주 시기에 자행된 것으로 불교가 중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난관들이다. 삼무일종(三武一宗)은 남북조시대의 북조에 해당하는 위나라와 주나라의 두 무종이 불교를 박해하여 승려를 환속시키고 사찰을 파괴한 것, 당나라 무종의 폐불, 그리고 오대 후주 세종의 폐불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불교 박해의 배경과 관련하여 국가 재정의 위기 극복, 도교와 불교의 첨예한 대립, 불교 교단의 타락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법난은 북위의 태무제(424-452)에 의해 일어났다. 당시 재상인 최호(崔浩)와 신천사도(新天師道) 창시자 구겸지(寇謙之)의 책동으로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태평진군 5년(444)에 왕공 이하 일반 서민들에게 사문에게 공양을 금지시키는 조칙을 내렸다. 그리고 7년(446)을 효시로 드디어 불법을 훼멸하고, 군병을 파견하여 사원을 불태우며 약탈하고, 통내의 승니로 하여금 모두 환속케 하였다. 사원 근처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모두 파견하여 체포하게 하고, 잡히면 반드시 참수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사원의 경내에도 두 번 다시 사문이 없었다.<sup>35)</sup> 태무제는 개오의 난(418-446)을 토벌하고 북위 전역에 폐불을 단행했다. 그 참상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법난은 북주의 무제(560-578)에 의해 일어났다. 무제는 부국강병책을 강행하는데 승려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였다. 천화(天和) 4년(567)에 환속승인 위원승의 ‘平延大寺’ 건립에 관한 그의 思想은 폐불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는 불교를 전면적으로 쇠신할 것을 상소하면서 도·속(道·俗)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출가자도 재가자도, 친밀한 사람도 소원한 사람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승려가 생활할 절을 따로 건립할 필요가 없이 성곽 자체가 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장안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방이 모두 승방(僧房)이며, 재가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성중(聖衆)이므로 특별히 출가승이 필요 없고 결혼을 인정하여 재가 생활 그대로가 부처의 길이라고 말하였다.<sup>36)</sup>

35) 鎌田茂雄, 『中國佛敎史』, 1978, p.105.

36) 이평래, 「三階敎 運動의 현대적 조명」, 『한국불敎학』, 한국불敎학회, 1995, p.9.

또한 무제는 불교와 도교의 승려와 도사를 불러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으나 그는 유교 우위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건덕(建德) 3년(574)에 도교, 불교 양교를 모두 폐한다는 칙서가 내려졌다. 이 때 4만여의 사원을 귀족들의 저택으로 귀속시키고, 승려 300만을 환속 시키며, 젊은 승려는 군대에 편입 및 농민들을 만들었다.

세 번째 법난은 당의 무종(841-846)에 의해 일어났다. 이것이 가장 극심한 ‘회창(會昌)의 폐불 사건’이다. 이는 회창 2년(842)에 승니 가운데 범죄자와 계행을 닦지 않는 자를 환속시켜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도교의 불교 배격에 대한 책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의 문제 발생, 교단 내 승려의 부패와 타락, 사도승(私度僧)과 위람승(偽濫僧)의 횡행 등이 있었다.<sup>37)</sup> 마침내 회창 5년에는 ‘훼불사 특승니 환속제(毀佛寺勒僧尼還俗制)가 발표되면서 전국적인 훼불을 단행하였다. 이 제도로 전국에 폐사된 사찰이 4,600여 개, 환속된 승려가 약 260,000명이었다. 또한 수천만 경(頃)의 토지가 몰수되고 풀어준 노비의 인원이 약 150,000명에 달했다. 그리고 장안과 낙양에는 4개의 사찰만 남기고 승려는 30인만 남도록 하였고, 한 주(州)에는 절 하나만을 남도록 하였으니 그 참상은 말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법난은 후주의 세종(954-959)에 의해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과 승려의 타락을 바로 잡기 위한 정치적인 연유(緣由)로 일어났다. 그는 현덕 원년(954)에 천하의 칙액(勅額)없는 사원을 모두 폐쇄(廢鎖)하였다. 이에 그 수가 3,336개소에 달하고 잔존하는 사원은 2,700개소에 불과하고 동상(銅像)을 폐기(廢棄)하여 동전 등을 만들었다.<sup>38)</sup> 또 남자는 15세 이상으로 경백장(經百帳)을 암송하거나 300장을 읽는 자만 출가케 하고, 또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여 출가위승(出家爲僧)을 금하다시피 하였다.

이 같이 삼무일종 법난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특히 유교와 도교의 토속신앙의 반격이 분쟁의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승려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른 재산 축적, 사원경제의 비대화, 승려들의 계급화 등 타락의 수준은 이미 자체 정화능력의 상실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교의 연기적 현상 속에서 교단의 타락은 피할 수 없는 과보를 초래하였고, 폐불(廢佛)과 같은 새로운 변화의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법난에 따라 불교는 토착화된 율종으로 점점 승단규범의 초석을 이루게 되었다. 수와 당 초기에 선종의 부흥과 더불어 기존의 율과는 다른 성격으로 청규(淸規)라는 규범이 출현했다.

37) 鎌田茂雄, 앞의 책, p.186.

38) 위의 책, p.236.

## 4. 근대 한국불교의 분쟁해결 사례

### (1) 불교정화운동과 분쟁해결

근대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불교정화운동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선총독부 사찰령을 통한 한국 불교의 정신적 탄압의 과정에서 일어난 폐해들과 해방 이후 1954~1962년 사이에 식민지 불교 극복, 계율정신의 수호 등 한국불교 교단의 정통성을 회복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다.

불교정화운동의 배경은 20세기 초 불교교단내에서 존재했던 대처승의 모습과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승려의 대처는 식민지 조선불교에서 일본 유학에 따른 대처의 풍조와 함께 불교의 세속화, 사원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며 불교의 헤명이 꺼져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1920년대 후반 급기야 30본산 주지가 되려면 청정비구여야 한다는 사법(寺法)을 개정하여 대처승도 본산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39)</sup> 당시는 주지의 권한이 비대화되어 본산 주지는 총독부가, 말사주지는 지방장관이 임명권을 갖는 있는 상황 속에 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이 관의 인허가 사항에 놓여 있었다. 또한 만해는 오히려 조선불교의 생존과 개혁을 위해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승려의 결혼을 피력했을 만큼 혼란스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화운동의 상징성은 파계승에 대항하는 청정승가의 복원을 위한 비구승의 움직임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선원수좌들로 중심을 이룬 1921년 선학원의 창립과 활동은 마침내 조선불교 선종 종헌을 선포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의 불교혁신총연맹(1946) 조직 및 전국불교도대회(1947) 개최 등은 이러한 갈등의 연장이었다. 또한 선 수행전통의 부흥과 관련한 선학원의 유교(遺敎)법회<sup>40)</sup>(1941), 봉암사 결사(1947)와 고불총림의 결성(1947) 등이 있었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 이러한 한국불교의 독신 승단 전통의 복원 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은 식민지 불교의 극복과 함께 민족불교 실현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는 대처승이 사찰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 7회에 걸쳐 진행되어온 불교정화 담화(1954-1955)의 의미는 그의 반일주의 및 반공주의를 위한 정치적 목적과 부합했다. 이것은 정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 비구승대회 개최 및 전구사찰 주지 임명 결의, 태고사 점유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정화운동은 점차 전국사찰로 확대되었다.

비구와 대처의 충돌은 대통령의 담화에 따른 전환점이 되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각 지방마다 사찰 소유권을 두고 법정 소송 및 대처승을 내쫓는 현상들이 벌어졌다. 때로는

39) 이경순, 「불교정화운동의 인식과 현재적 의미」, 『대각사상』, 대각사상연구원, 2020. p.6.

40)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p.6, “遺敎法會는 식민지 불교체제하에서 정법 수호, 계율수호, 민족불교 지향, 비구승단 수호 등의 성격을 갖는다.”



경찰과 외부 지원세력이 동원되었고, 또 승려자격 8대 원칙에 미달되어 일부 대처측은 자진 환속과 가정생활을 버려야 승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쟁은 1962년까지 이어진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로써 큰 상처를 남긴 분규였다. 그리고 비구·대처의 분쟁은 1962년 효봉스님을 중정으로 통합종단이 출범함으로 일단락되었다.

## (2) 10.27 법난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 이은 수배자 또는 불순분자 검거와 불교계 정화를 명목으로 군부독재에 의한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단은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불법침입 및 수색한 사건이다. 이때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병력이 약 3만 2천여 명이 투입되어 승려 약 1,900여명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구금, 협박, 무차별 폭력과 고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삼척교육대로 끌려갔다. 이 사건으로 한국 불교계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단순히 산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진실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명예를 이어 왔다.

불교계는 이 사건을 1980년 신군부의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했으며, 종단은 체탈도침된 승려들을 특별사면 했다. 1984년 10월 27일에는 공식적으로 ‘10.27법난에 대한 규탄 및 규명대회’를 개최하였다. 1985년 10월 27일에는 ‘10.27법난 규탄 및 범불교도 쉼기대회’, 1986년 9월 7일은 해인사 ‘전국 승려대회’에서 10.27법난의 해명을 요구하는 10개항의 결의문 채택을 이어갔다. 이것은 1988년 노태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후 10.27 법난 진상 찾기가 시작되었으며<sup>41)</sup>,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국 평화통일불교협의회는 2005년에 ‘10.27 불교법난대책위원회’ 구성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마침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으며, 2008년 ‘10.27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법난특별추진위원회는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의 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의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2011.11.11.)이 만들어졌다.

불교계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로서 객관적인 분쟁 해결의 길을 모색하기란 쉽지가 않다. 인간 존엄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고려해서 누군가 평화적 화해를 모색 및 중재를 책임질만한 사람도 없으며, 피해자인 불교계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종교로서 나름 감당해야 할 역사적 의의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불교계는 오랜 시간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의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있다.

41) 2005년에 삼보스님의 “10·27 법난(法難) 진상규명 자해소동”과 월주스님의 “10.27 법난 때 죄수복 입고 조사받음” 등이 매일신문, 문화일보 등에 보도된 바 있음.

### (3) 종권 다툼과 분쟁해결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동안 크고 작은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이 늘 있어왔다. 그것은 불교계의 정화운동 이후 통합 종단이 설립됨으로써 초기 선학원의 관계를 비롯해서 종권다툼이 거듭하여 발생했다. 이는 종교의 유기적 기능과 관련해서 시대와 사회 흐름에 따른 제도개혁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일이다.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는 자본주의 성장의 과도기에 따른 세속화와 함께 종권과 이권들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내는 이익, 권력, 폭력의 모습들은 결국 비폭력과 무소유의 불교 권위를 상실하게 하였고, 종도들은 이탈하며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종권의 분쟁은 종단 내부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늘 세속법에 의존하였다.<sup>42)</sup> 한 쪽은 방식과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상대방은 직무방해금지의 신청 등 계속되는 법적인 공방은 오랜 전통인 원효의 “화쟁” 방식이나 현대적인 ADR 방식인 “조정”이나 “중재”가 아닌 늘 소송 중심이었다. 또한 총무원 점유가 곧 종권 확보라는 공식은 당사자들 사이에 폭력을 통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했으며, 이는 종교의 민낯을 과감 없이 드러내었다.

그러나 종단 분쟁에 관계된 사람들이 본사와 거대 문중들이 충돌하여 불교 내부와 외부에 큰 파열음을 일으키는 것은 초기 종단의 기초를 다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수용해야만 했었다. 특히 분쟁과 소요의 주요 세력들이 원로회의, 중앙총회, 총무원, 교구본사 주지회의 등 종단의 대표기구와 종도들의 대표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종도들이 전통적인 율장과 대승계에 따른 비구계와 비구니계 및 품계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1962년 이후 세속화되고 현대화된 종단의 종헌종법의 제도적 틀이 종단 운영의 실질적인 규범이 된 원인이 크다. 이는 종단 내부 갈등의 발생에 따른 화합 공동체를 위한 율장의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종헌종법의 현대 사법기관의 분쟁해결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종단은 더욱 제도화되었고, 이에 따른 내부적인 분쟁의 양상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종도들은 적폐청산과 함께 종단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화쟁의 방식이 아닌 종헌종법에 따른 해결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2010년에 설립한 화쟁위원회의 활동인데<sup>43)</sup> 이는 사례를 통해 모두 비폭력의 대화를 통한 불교 전통의 합리적인 방식을 갖추어 왔다.

종단 내부의 갈등과 분쟁은 ‘꼬삼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종단 운영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쟁과 멸쟁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지혜로운

42) 김경호, 「조계종 종권분쟁 연구」, 『불교평론』 통권 2호, 2000, pp.332-338.

43) 대표적으로 2014년에 처음 시작한 ‘100인 대중공사’는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종단 내부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 요소, 희망에 찬 참신한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이야기가 소통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해결책은 모든 종교들의 과제이다. 따라서 중헌중법의 공정성과 합법성 외에도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화쟁 또는 ADR을 위한 구조적 시스템 보완 및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관련한 BDR은 화쟁과 ADR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종교 사인(私人)간의 분쟁, 종단 분규나 분쟁 등으로부터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승가공동체의 모습을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IV. 결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별, 업종별, 성별 등 다양한 갈등과 각종 민원 발생과 소송 등 법적인 분쟁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또한 해결기관의 포화 상태는 갈등문화를 증폭하게 하였고, 점점 사회 구조의 안정과 통합에 있어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따른 사회적 반응들로 많은 선진 국가들은 이미 화쟁을 위한 노력으로 ADR 제도를 도입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응용방안을 모색하며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해 자발적인 운영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부족한 시점에서 학교와 연구소 등 이 외에도 종교적 영역에서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이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BDR의 영역은 이미 문명의 초기부터 소규모의 공동체와 마을에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장로나 종교 지도자가 분쟁해결사의 역할로 공동체 화합과 번영에 이바지했던 경험과 같은 것이다.

종교 활동의 본질이 개인의 행복과 나아가 사회적 교화와 통합에 목표가 있듯이 전문성을 갖춘 불교 조정인들의 사회적 참여는 종교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효과적인 사회 참여의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마하승기율』 券7(『大正藏』 22, p.282下).
- 『사분율』 券5(『大正藏』 22, p.595上).
- 『오분율』 券3(『大正藏』 22, p.20下).
- 권수진,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성균관법학』 제28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 권오민, 「부과분열과 파승」, 『불교연구』 제38집, 2013.
- 김상영, 「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61(3), 2020.
- 김상영, 「ADR의 이념론」, 『財産法研究』 제27권 제3호, 2011.
- 김성식, 『불교적인 대체적 분쟁해결(ADR) 방법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박사학위, 2021.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김용길,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중재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2.
-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입법 세미나 자료(국회의원회관), 2018.
- 김용길, 「중재합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다76573 판결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 김정천, 『佛敎 修行의 頭陀行 研究』(동국대 박사학위), 2003.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50년사』, 2016.
- 신군재,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안성훈·오카자키 마유미, 「나이사이(內濟)제도에 대한 小考-일본 에도(江戸)시대의 전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
- 안성훈·심재우·조균석·김선혜,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양경승, 「우리나라 ADR의 활성화방안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2010.
- 이수중,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3.
- 이자랑, 「단사인(斷事人) 제도와 승가 분쟁 해결의 원칙:제2결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와 사회』 10권 1호, 2018.

- 이자랑, 「멸쟁진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선문화 연구』 제12집, 2012.
- 이자랑, 「화합승의 의미와 실현 방법에 관한 고찰」, 『불교학연구』 제52호, 2017.
-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9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조홍식, 「代案的 紛爭解決制度(ADR)의 經濟學 - 環境紛爭調停制度에 대한 評價를 中心으로」, 『比較私法』 13.1, 2008.
- 조홍준, 「ADR의 社會統合的 機能」, 『저스티스』, 2013.
- 최석범,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第20卷 第3號, 2010.

## ABSTRACT

### A Study on Religious Op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Conflicts -Focusing on the historical cases of Buddhism-

Kim, sengsik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already one of disputes. Since circa 2010, the average number of lawsuits filed every year is upwards of six million cases, and resolving disputes through trials is already fully saturated. The functional roles of the court reflect that there are many lacking areas such as systems, tools, and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ADR, which is carried out in advanced capitalist nations to supplement the judicial functions, has also been implemented in our society for the past 60 years. However, for the reason why the usage rate of ADR did not increase for legal consumers, we cannot overlook government activities that did not make sufficient promotions related to the lack of awareness. In Korea, ADR is mainly composed of government-initiated types,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ADR framework act that can play an integrated role. Furthermore, for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court, over 80% of conciliation are conducted focusing on court of lawsuits, and legal basis and procedures between institutes are different for administrative ADR, and communication does not go smoothly, thus making it inefficient. Such examples cannot avoid being a background for criticism when considering the fundamental ideologies and beliefs of ADR.

The Vinaya Pitaka of sangha related to ADR is a separate method for operating communities. This is the 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method that encompasses personal ethics, organizational ethics, harmony through various community gatherings, and adhikaranasamatha on the four issues that could occur in legal review procedures. This has become the sufficient background for succession and development for parisa sangha and gana sangha among individuals.

**Key Words** : Dispute, ADR(Alternative Distribute Resolution), BDR(Buddhist Dispute Resolution), Distribute Resolution, Religion.

---

\* Majoring in Engaged Buddhism Dept. of Buddhist Studies, Joong-Ang Sang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Arbitrator.